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02. 2.

발 의 자 : 정치개혁특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0년 7월 12일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2000년 12월 4일 김용학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6월 12일 최연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등 이상 3건의 법률안이 2002년 1월 21일에 각각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됨.

나. 2002년 1월 23일에 국회관계법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002. 2. 22까지 3차례의 회의를 열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된 상기 3건의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함.

다. 2002년 2월 25일 제2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회관계법심사소위원회가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상기 3건의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을 재심사함.

라. 2002년 2월 25일 제2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회관계법심사소위원회 및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심사경과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등 그간 인사청문회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일부 미비점등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골자

- 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2일에서 15일로, 인사청문회의 기간을 2일에서 3일로 연장함(안 제9조제1항).
- 나.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의 제출기간을 2일에서 3일로 연장함(안 제9조제2항).

법률 제 호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12일”을 “15일”로, “2일”을 “3일”로 하고, 동조제2항중 “2일”을 “3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u>12일</u>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u>2일</u> 이내로 한다.</p> <p>②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u>2일</u>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p> <p>③ (생략)</p>	<p>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 ----- -----<u>15일</u>----- ----- ----- <u>3일</u>----- ②----- ----- <u>3일</u>----- ----- ③ (현행과 같음)</p>